

독일

백인립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Marburg University) 정치학 박사과정)

■ 독일 자영업자 현황

2003년 독일 인구는 8천2백53만명이고, 그 중 남성이 4천36만명, 여성이 4천2백18만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다. 이 중에서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는 4천20만명(남성: 2천2백31만명, 여성: 1천7백88만명)이고,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자는 3천6백17만명(남성: 2천만명, 여성: 1천6백18만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상의 취업자들을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03년 독일 취업자에 대한 직업별 분류 (괄호안은 여성)

(단위: 천명, %)

| 구 분 | 사무직 노동자 | 생산직 노동자 | 공무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
| 명 수 | 18,633 (10,517) | 11,166 (3,526) | 2,244 (775) | 3,744(1,066) | 385 (292) |
| 비 율 | 51.5 | 30.9 | 6.2 | 10.4 | 1.1 |

출처: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www.destatis.de)의 수치를 토대로 재구성

독일 통계연감에 나온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말로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업적인 또는 농업적인 기업이나 작업장을 소유주로서 경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및 모든 자유직업 행사자, 가내공업자 그리고 중간장인’¹⁾ 한 마디로 독일에서의 자영업자는 피용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농민, 수공업자, 예술인·작가, 의사, 변호사 그리고 기업가와 고용자 등등의 직업군

1)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3, Wiesbaden 2003, P. 98.

을 통칭한다.

위의 표를 보면 취업자 중 10.4%가 자영업자이고, 전체 남성 취업자 중 13.4%, 총 여성 취업자 중 6.6%가 자영업자에 속한다. 또한 자영업자 중 동료없이 홀로 일하는 이른바 '개인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1백80만명에 이른다.

현재 독일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률의 증대로 말미암아 교육, 보건, 문화, 미디어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는 '개인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별 수급대상자

독일의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독일 사회보장제도 급여 전반과 그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그 시초에서부터 워낙 '남성 정규 노동자'를 중심에 두고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자영업자의 위상을 파악해 보기 위해 독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개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2>는 독일 정부에서 발간하는 사회예산(Sozialbudget)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자세한 급여 항목과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다.

<표 2> 2000년 독일 사회보장제도 급여

| 제도별 구분 | 비용 | | |
|--------------|------------|-----------|------------|
| | 금액 (십억 유로) | GDP 대비(%) | 사회예산 대비(%) |
| 1. 사회보장 | 512.16 | 25.2 | 74.1 |
| 1.1 일반제도 | 457.57 | 22.5 | 66.2 |
| 1.1.1 연금보험 | 231.95 | 11.4 | 33.5 |
| 생산직 노동자 연금보험 | 112.19 | 5.5 | 16.2 |
| 사무직 노동자 연금보험 | 105.37 | 5.2 | 15.2 |
| 광업 노동자 연금보험 | 4.39 | 0.7 | 2.1 |
| 1.1.2. 의료보험 | 132.82 | 6.5 | 19.2 |
| 1.1.3. 간호보험 | 16.68 | 0.8 | 2.4 |
| 1.1.4. 재해보험 | 11.02 | 0.5 | 1.6 |



| 제도별 구분 | 비용 | | |
|---------------------------|------------|-----------|------------|
| | 금액 (십억 유로) | GDP 대비(%) | 사회예산 대비(%) |
| 1.1.5. 고용보장제도 | 65.10 | 3.2 | 9.4 |
| 실업보험급여 | 23.61 | 1.2 | 3.4 |
| 1.2. 특별제도 | 5.22 | 0.3 | 0.8 |
| 1.2.1. 농민연금제도 | 3.28 | 0.2 | 0.5 |
| 1.2.2. 자유직업인 연금제도 | 1.94 | 0.1 | 0.3 |
| 1.3. 공무원을 위한 제도 | 49.37 | 2.4 | 7.1 |
| 1.3.1. 연금 | 33.39 | 1.6 | 4.8 |
| 1.3.2. 가족수당 및 기타 보조금 | 15.98 | 0.8 | 2.3 |
| 2. 고용자 급여 | 54.20 | 2.7 | 7.8 |
| 2.1. 질병시 임금지속지불 | 26.28 | 1.3 | 3.8 |
| 2.2. 기업노령연금 | 14.21 | 0.7 | 2.1 |
| 2.3. 기타 고용자 급여 | 5.78 | 0.3 | 0.8 |
| 2.4. 공기업의 추가연금 | 7.94 | 0.4 | 1.1 |
| 3. 보상급여 | 6.78 | 0.3 | 1.0 |
| 3.1. 사회적 보상 | 5.32 | 0.3 | 0.8 |
| 3.2. 기타 (부담조정 등) | 1.46 | 0.1 | 0.2 |
| 4. 장려제도와 부조제도 | 52.78 | 2.6 | 7.6 |
| 4.1. 사회부조 | 25.72 | 1.3 | 3.7 |
| 4.2. 청소년 복지 | 16.78 | 0.8 | 2.4 |
| 4.3. 아동수당 | 0.12 | 0.0 | 0.0 |
| 4.4. 양육비 | 3.74 | 0.2 | 0.5 |
| 4.5. 교육장려급여 | 0.92 | 0.0 | 0.1 |
| 4.6. 주택급여 | 4.31 | 0.2 | 0.6 |
| 4.7. 재산형성 장려급여 | 1.19 | 0.1 | 0.2 |
| 5. 간접급여 | 70.94 | 3.5 | 10.2 |
| 5.1. 세금감면조치 (가족급여조정제도 제외) | 39.29 | 1.9 | 5.6 |
| 5.2. 가족급여조정제도 | 31.65 | 1.6 | 4.5 |
| 사회예산 총계 | 696.86 | 34.3 | 100.0 |

출처: Heinz Lampert, Lehrbuch der Sozialpolitik, Springer-Verlag 2004, P. 243 (원출처: 통계연감 2003, P. 470f.)

사회예산에 담긴 사회보장급여는 국가기구와 공공조직의 급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사회급여(예를 들어 기업연금)까지 포괄하고 있다.

첫번째 항목인 '1. 사회보장'은 사회보장이란 용어 자체를 협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결국 '사회보험' 제도를 가리킨다.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상의 특징으로 인해 일반제도, 특수제도, 공무원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첫번째 항목을 사회보험제도의 원 기능에 맞게 '위험(노령, 질병, 실업 등)'에 따른 구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재정리해 볼 수 있다.

〈표 3〉 5대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한 제도

| |
|---------------------------------------------------------------------|
| 1. 공공연금제도 - 연금보험 (5대 사회보험 중의 하나) 농민연금제도 자유직업인 연금제도 공무원원호제도 |
| 2. 의료보험 (5대 사회보험 중의 하나) |
| 3. 간호보험 (5대 사회보험 중의 하나) |
| 4. 재해보험 (5대 사회보험 중의 하나) |
| 5. 고용보장 제도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급여 I (5대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실업보험)과 실업급여 II |

공공연금제도의 가장 큰 축인 연금보험 안에는 생산직 노동자 연금보험, 사무직 노동자 연금보험, 그리고 광업 노동자 연금보험이 통합되어 있다. 이 세 연금은 각각 1889년, 1911년, 1923년 설립되었고, 그 후 1976년 하나의 법 체계(사회법 4호)안에 통합되었다. 즉 포괄범위, 급여조건, 연금산정공식 등에 있어서 세 연금 모두 동일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연금체계를 위한 보험조합은 오늘날도 여전히 생산직 노동자 연금조합들, 사무직 노동자 연금조합, 광업 노동자 연금조합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광업 노동자 연금보험의 보험료, 급여수준 및 정부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두 보험과는 다르게 특별한 규정을 따른다.

연금보험의 첫번째 의무가입 대상자는 공무원을 제외한 피용자들이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다음의 몇몇 부류가 의무가입 대상자이거나 연금보험에 의무가입할 수 있다. ① 수공업자, 가내공업자, 예술인·작가, 어민, 그리고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교사와 간호인 등의 몇몇 자영업 직업군



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명’의 고용자만을 위해 일하는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²⁾ ③ 자영업을 시작한 지 5년 안에는 본인의 신청을 통해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독일의 모든 국민은 연금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지만, 이 임의 가입자들은 의무가입자와는 다른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³⁾

농민연금제도와 자유직업인 연금제도는 연금보험처럼 노령, 장애 그리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만을 위한 공공연금제도이다. 농민연금제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농민들이 의무가입된다. 또한 1995년부터는 기존 가입자의 배우자도 별도로 보험조합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자유직업인 연금제도의 자유직업인은 자신들의 직업을 위한 공법상의 협회가 있어 그곳에 강제가입하여야 하며, 정부의 요금 통제에 의해 소득이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직업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건축사, 변호사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자신들만의 자유직업인 보험조합들에 강제가입하여야 한다.

공무원 원호제도는 공무원들의 노령, 산재, 사망시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한 재원은 공무원들의 기여금없이 일반 세금으로만 충당된다.⁴⁾

의료보험과 간호보험의 포괄 대상자는 동일하다.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피용자는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자영업자 중에는 농민과 예술인·작가 등 매우 제한된 직업군만이 의무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제도도 존재하나 고소득의 피용자와 중증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는 조항이지 자영업자와는 관계가 없다. 단, 피용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한 경우 등은 계속 의료·간호 보험에 남아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2) 이 조항은 1999년에 도입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고용자와의 계약에 의해 동일 사업장에서 피고용자의 자격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3) 임의가입자는, 예를 들어 보험료 액수와 납입기간을 피보험자 의사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장애연금에 대한 권리등이 없다.

4) 이상의 공공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령자 소득의 78%를 충당하는 노령자를 위한 소득보장의 첫번째 축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두번째 축은 기업연금으로서 이 연금액은 노령자 소득의 7%를 차지하고 있고, 세번째 축은 민간보험 등의 사적 자구책으로서 이를 통해 총 소득의 10%가 나온다.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Rentenversicherung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2003, Bad Homburg 2003, P 59.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회원에 대한 우대 차원이자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재해보험에도 공무원을 제외한 피용자가 일차적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자영업자 중에는 농민, 어민, 가내공업자 그리고 간호인 등의 몇몇 직업군이 의무가입 대상이고, 나머지 자영업자들은 재해보험 규약에 의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때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두 부류에서 벗어난 자영업자들은 재해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정책 등 독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보험의 보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보장제도라는 큰 틀 안에 실업보험급여와 함께 묶여 있다. 과거 실업보험급여는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둘 모두 실업보험 가입 대상자만이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실업급여는 2005년 1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받던 사회부조와 실업부조가 합쳐지면서 ‘실업급여 II’가 되었고, 이것은 실업자라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기존의 실업보험의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I’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고, 이 급여를 위한 실업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는 예전처럼 공무원을 제외한 피용자이다. 자영업자 중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의무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의사에 의한 의무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도, 자영업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중 최소 12개월을 실업보험의 의무가입자였거나, 자영업 개시 바로 직전 실업보험의 의무가입자였어야 한다. 따라서 실업보험의 자영업자 관련 조항은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 회원에 대한 우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업보험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두번째 항목의 ‘2. 고용자 급여’는 사기업 또는 공기업에 고용된 피용자를 위해 고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세번째 항목의 ‘3. 보상급여’는 주로 2차대전으로 인해 생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피해자들에게 수당 또는 부조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이 제도 또한 직업적 분류로서 자영업자와는 관련이 없다.

‘4. 장려제도와 부조제도’에는 부조급여와 수당급여 또는 수당과 부조의 특징이 결합된 급여, 한마디로 말해 비보험급여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부조와 주택급여는 저소득자에 대한 급여이다. 아동수당과 양육비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급여이다. 교육장려급여는 직업교육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금(수당급여)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금(부조급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년 복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 저축장려급여는 공무원을 포함한 피용자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직접급여'에 대비되는 '5. 간접급여'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치(세금감면조치)와 가정 내에 있는 아동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조치(가족급여조정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중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는 결국 공공연금제도의 연금보험, 농민연금제도, 자유직업인 연금제도 그리고 의료·간호보험 및 재해보험밖에 없다. 그러나 그나마 존재하는 이 제도들에 대해 모든 자영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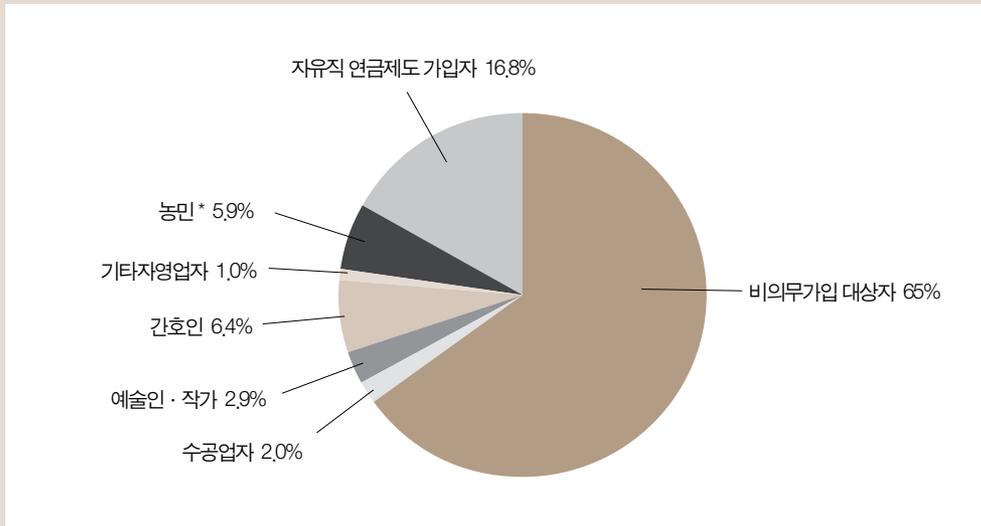
〈표 4〉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 제도 | | 의무가입 자영업자 |
|----------|------------|----------------------------------------------------------------------------------------------------------------------------------------------------------------|
| 연금제도 | 연금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공업자, 가내공업자, 예술인·작가, 어민, 교사와 간호인 등 지속적으로 '한 명'의 사용자만을 위해 일하는 자영업자 자영업을 시작한 지 5년 안에는 신청을 통해 |
| | 농민 연금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민 |
| | 자유직업인 연금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등 |
| 의료·간호 보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민, 예술인·작가 등 |
| 재해보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민, 어민, 가내공업자 그리고 간호인 등 나머지 자영업자들은 재해보험 규약에 의거 경우에 따라 |

그럼 이제부터는 이 사회보장제도들에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입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이를 위해 얼마의 보험료를 내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2년 공공연금제도에 의무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3,654,000명)의 35%밖에 되지 않는다. 이 35% 중 5.9%가 농민연금제도에, 16.8%가 자유직업인 연금제도에 속해 있다. 그리

[그림 1] 공공연금제도의 의무가입 자영업자



* 농민연금제도의 전체 가입자 중 의무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 제외

고 연금보험의 수공업자가 2%, 예술인·작가 2.9%, 간호인 6.4% 그리고 기타 자영업자가 1%이다. 결국 나머지 65%의 자영업자가 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2002년 연금보험에는 수공업자 72,287명, 예술인·작가 107,026명, 간호인 233,257명, 기타 자영업자 35,181명이 가입되어 있다.⁵⁾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가입기간은 60개월이고,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액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그간의 소득과 보험료 지불 기간이다. 예를 들어 45년간 가입되어 있었고, 매년 모든 피보험자의 평균 소득만큼의 소득을 가졌다면, 2003년 7월부터 1175.85유로의 연금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이는 명목소득의 48.3%에 해당하고,

5)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www.vdr.de/Statistik, 2004. P. 20f.



(노동자인 경우) 실질소득의 70%에 달하는 금액이다. 연금액은 임금상승률에 따라 매년 정부가 조정한다.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25%에 해당하나, 만일 배우자의 나이가 45세가 넘고, 집에 어린 아이가 있으면 60%까지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완전 장애시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 장애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5세 전까지만 지급된다. 보험료는 소득의 19.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노동자의 경우 노동자와 고용자가 그 반반씩을 지불하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자신이 혼자 이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예술인·작가의 경우는 자신들이 보험료의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예술인 사회기금(Künstlersozialabgabe)’ 과 정부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이 ‘예술인 사회기금’은 출판사, 방송국, 화랑 등 이들의 작품을 판매·이용하는 곳에서 지불한다.

농민 연금제도에는 2002년에 총 344,562명 (의무가입 배우자 111,227 명 포함)의 농민이 가입되어 있다.⁶⁾ 노령연금은 65세가 되고, 최소 15년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농민 연금제도의 연금은 소득비례 급여가 아니고, 개인의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그 액수가 차이가 난다. 대략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고, 2003년 전반기에 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365.02유로를 받았다. 보험료 또한 균일하여, 피보험자들은 2003년에 월 198유로의 보험료를 지불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관련해서는 연금보험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자유직업인 연금제도에는 2002년에 614,351 명이 가입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의사가 47%이고, 치과 의사가 10%, 수의사 3.1% 약사 9%, 건축가 12%이다 그리고 변호업과 세무사 등이 나머지 18.6%이다.⁷⁾ 위의 두 연금제도와는 달리, 자유직 연금제도는 주법(州法)에 의해 운영된다. 즉 각 주마다 각각의 직종을 위한 여러 조합이 존재하고, 이 조합들은 주법에 따라 자신들만의 규정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연금제도의 연금액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조합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2002년에 평균 보험료는 월 660유로였고, 평균 노령연금은 월 1878.33유로, 유족연금은 1100.71유로, 장애연금은 2071.37유로 였다.

2002년 의료보험 및 간호보험에는 농민 215,863 명, 예술인·작가 103,651명이 의무가입되어 있

6) 농민연금제도와 관련된 통계치는 농민사회보험 홈페이지 www.lsv.de와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3, Wiesbaden 2003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자유직업인 연금보험조합 연합회 홈페이지 www.abv.de 참조

다.⁸⁾ 물론 기타 의무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이들은 아주 소수이므로 위 두 집단만을 토대로 비율을 내 본다면, 전체 자영업자의 8.7%가 의무가입자의 영역에 포괄된다.

의료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는 의사치료와 약품 등의 현물급여와 질병수당의 현금급여로 구성 되어 있다. 이를 위한 보험료는 각 의료보험조합마다 다른데, 2003년 평균치는 소득의 14%로 환산 되었다.⁹⁾ 보험조합은 의치(義齒)치료 등 몇 가지 초과치료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거의 모든 의사치료 비용을 병원에 지불한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피보험자도 이 의사치료 비용을 위해 보험료 이외에 매 분기별 10€씩 더 내야 한다. 피보험자의 약품 및 치료도구 구입시에도 의료보험조합은 그 비용을 부담하나, 단 비용의 10% 정도는 피보험자가 구입시 직접 계산하여야 한다. 질병수당은 명목소득의 70%에 해당하며, 질병 발생 후 보통 7주부터 78주까지 지급된다.

간호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의 1.7%이다.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피간호인으로 구분된 사람은 다시 ① 매일 한 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매일 세 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매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 현물급여로서 ①의 경우 월 384유로, ②의 경우 921유로 그리고 ③의 경우 1,432유로까지의 간호가 지급된다. 이러한 현물급여 대신에 피간호인을 친척이나 친구가 돌보게 되면, 그 간호인에게 ①의 경우 월 205 유로, ②의 경우 410유로 그리고 ③의 경우 665유로까지의 현금급여가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재해보험에도 농민, 간호인 등 적은 수의 자영업자가 포괄된다. 산업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이의 회복을 위한 의사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목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재해수당을 최대 70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생업능력의 20% 이상을 상실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완전 상실시 소득의 2/3, 부분 상실시 상실된 소득을 고려하여 환산된 연금이 지급된다. 산재로 인한 사망시는 유족에게, 연금보험 가입자 평균소득의 1/7에 해당하는 사망일시금과 기존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재해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사고위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계산된다.

8)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Statistisches Taschenbuch Gesundheit 2002, www.bmggesundheits.de, 2002 참조

9) 다른 자영업자들은 14%의 보험료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반면, 예술인·작가는 위의 연금보험처럼 의료보험료의 절반만 지불한다.

■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장점으로는 직업 집단 내에서의 연대성과 자율성 그리고 급여의 높은 소득 대체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조합들이 직종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제도 자체의 복잡성은 차치해 두더라도 인원 및 경비가 낭비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회적 안전망에서 자영업자들이 누락된다는 점이다. 연금 제도만을 보더라도 3명 중 2명의 자영업자가 공공연금제도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예외 집단에는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자영업자’ 들도 포함되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¹⁰⁾ 이 개인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기업가와 같은 고소득의 자영업자와 일반 노동자 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빈곤한 자영업자가 누락되는 문제는 독일 복지체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KLI**

10) Sigrid Betzelt, Soziale Sicherung “Neuer” Selbständiger: Reformperspektiven im Spiegel europäischer Nachbarstaaten, ZeS-Arbeitspapier Nr. 10/2002, Bremen 2002.

참고문헌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Statistisches Taschenbuch Gesundheit 2002, www.bmggesundheits.de, 2002
- Heinz Lampert, Jörg Althammer, Lehrbuch der Sozialpolitik, Springer-Verlag 2004
- Sigrid Betzelt, Soziale Sicherung “Neuer” Selbständiger: Reformperspektiven im Spiegel europäischer Nachbarstaaten, ZeS-Arbeitspapier Nr. 10/2002, Bremen 2002
-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3, Wiesbaden 2003
- 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Rentenversicherung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2003, Bad Homburg 2003
-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www.vdr.de/Statistik, 2004
- 농민사회보험 홈페이지 www.lsv.de
- 자유직업인 연금보험조합 연합회 홈페이지 www.abv.de
-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www.destatis.de